

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다음에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 2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)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.

1. 장 수 관 : 사회산업국장
2. 분 임 장 수 관 : 사회과장
3. 경 리 관 : 총무국장
4. 분 임 경 리 관 : 재무과장
5. 지 출 원 : 경리계장
6. 수입금 출납원 : 사회계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(신설)	제9조의 2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) 영세민생 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 정한다. 1. 징 수 관: 사회산업국장 2. 분 입 징 수 관: 사회과장 3. 경 리 관: 총무국장 4. 분 입 경 리 관: 재무과장 5. 지 출 원: 경리계장 6. 수입금 출납원: 사회계장